

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	<h1>보도자료</h1>	 힘내라 대한민국
	• 배포 : 2020. 09. 14.(월)	
<b>담당자</b>	• 사업화지원Hub실 이혜령 실장/민성진 수석연구원 • ☎ 031-389-6321 / 6357 • <a href="mailto:jeri@kaia.re.kr">jeri@kaia.re.kr</a> / <a href="mailto:sfromw@kaia.re.kr">sfromw@kaia.re.kr</a>	
<b>보도일시</b>	• 9월 15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즉시 보도 가능	

## 국토교통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“최초” 지정 지금 신청하세요

- 5년 이내 국토부 R&D 종료 중소기업 제품대상으로 10월8일(목)까지 접수 -

-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(원장 손봉수, 이하 국토교통진흥원)은 중소기업 기술 개발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제1차 “국토교통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” 신청 접수를 오는 10월 8일(목)에 마감한다.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「국토교통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」를 올해 처음 도입하였으며, 제도 운영은 기업성장지원Hub(국토부 지정)인 국토진흥원에서 담당하고 있다.

### 【 국토교통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개요 】

- (혁신제품 개념) 우수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, 공공서비스 증진을 위해 국가 R&D로 제조된 제품의 혁신성이 인정될 경우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제도
- (신청대상) 국토부 R&D 종료 5년('15.1.1~'19.12.31) 내 과제 중 제품화에 성공한 과제 수행기관(중소기업)
- (평가지표) 시장성(20), 혁신성(40), 공공성 및 사회적가치(40)
- (인센티브) ① 혁신제품 **구매목표제**를 운영하여 혁신조달 추진성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적용, ② 혁신제품 지정제품은 대해 **수의계약 및 구매면책 제도** 적용
- (문의처) 1599-8686(내선 3번 또는 5번)

- 국토교통진흥원은 접수된 제품의 시장성, 혁신성,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조달적합성 검토, 현장평가, 발표평가 등의 지정절차를 거쳐 연내 1차 지정제품 발표를 완료할 예정이다.
- 금번 신청은 '15년 1월부터 '19년 12월까지 최근 5년 이내에 종료된 국토부 R&D과제를 수행한 중소기업이 대상이며,
  - 심사를 통과한 제품은 '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'으로 3년동안 지정되어 조달청 혁신장터(<http://ppi.g2b.go.kr/>)에 등록되며,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및 구매면책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.
- 국토교통진흥원 담당자는 “국토교통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을 통해 중소기업 우수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문턱을 낮추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성공률을 높이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” 며, 앞으로 연 2회 정기적인 공고를 통해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※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([www.kaia.re.kr](http://www.kaia.re.kr))

국토교통부 산하 유일한 국가 R&D사업 전문기관으로서 5,247억 원('20년 기준)의 R&D 예산을 집행관리하고 있으며, 주요 사업으로는 건설기술연구사업, 플랜트연구사업, 도시건축연구사업, 교통물류연구사업, 철도기술연구사업, 항공안전기술개발사업 등과 건설·교통 신기술 인증사업이 있다.

## □ 추진목적

-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(R&D)을 통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한 혁신 제품의 초기 시장 진입지원 및 조달연계 활성화

## □ 추진근거

-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아목
- 기획재정부계약예규 (계약예규) 정부 입찰·계약 집행기준 제6장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절차
- 국토교통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지침(국토부고시 제2020-573호)

## □ 주요내용

- (지정 내용)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, 각 중앙관서의 수요와 연계될 수 있고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“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”으로 지정
- (지정 혜택) “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”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을 연계하는 등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지원
  - 수의계약 : 『조달사업법』 혁신제품 대한 수의계약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『혁신제품 제품』의 수의계약 근거 마련(20.10월 이후)
  - 구매면책 : 혁신제품의 구매 책임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은 한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한 책임 면제 조항 반영(20.10월 이후)
  - 혁신구매목표제 : 기관별(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지방 공기업)에게 혁신제품에 대한 혁신구매목표액을 부여하고 매해 달성률 평가를 통해 공공수요 촉진

## □ 신청 자격

- 아래 두 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
    - ①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
    - ② 종료년도 기준 최근 5년 이내('2015.1.1. ~ '2019.12.31)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완료(성공) 기술\*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
- \* 연구개발사업 최종평가 결과 성공과제(60점 이상) 통보를 받은 기술

## □ 신청 대상 제품

-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·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·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
-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(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을 포함한다)을 개선·개량하여 발전시킨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·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·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

## □ 신청 기간 및 방법

- (공고기간) '20. 8. 27(목) ~ '20. 10. 8(목) 16:00까지
  - (접수기간) '20. 9.28(월) ~ '20. 10. 8(목) 16:00까지
  - (신청방법)
    - ① 나라장터(www.g2b.go.kr)에서 물품식별번호 발급\* 완료 확인
    - ② 국토교통과학기술기술진흥원 접수처 이메일로 신청서류 제출
- \* 신청대상 제품의 세부품명을 나라장터에 제조 물품으로 등록, 「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(조달청 고시)」 제13조, 제22조 및 제23조 참고

## □ 문의처 (국토진흥원 사업화지원Hub실 기업지원팀)

- (연락처) 1599-8686(내선 3번·5번) /bizhub@kaia.re.kr